

① 신기술 활용 부문

○ 참여자격

- '18~'21년 고속도로(도공) 건설·개량·유지관리 공사계약 실적이 있는 시공회사 및 그 회사가 활용한 신기술 보유 중소기업 (시공회사와 중소기업 동반 참여 必)

* '20년 선정기술 제외

○ 참여요건

- 道公기술마켓 등록신기술 활용실적이 있어야함 (신청 건수 제한 없고 1개社가 다수 기술 신청 가능)

② 일자리 창출 부문

○ 참여자격

- 등록신기술 보유 중소기업 ('21.10.19 기준)

* '20년 선정기업 제외

○ 참여요건

- 등록 이후 도공 활용실적이 있어야함

※ 활용실적 기준 : 하도급계약서, 자재납품(물품)계약서, 세금계산서

※ 신기술 활용 부문에 대해 현재 고속도로 현장(건설사업단, 지역본부, 지사)에 참여중인 회사는 해당기관을 통해 참여